

## 경운대학교 임시직원퇴직금지급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의 임시직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급대상자)**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에게 적용한다.

**제3조(지급액의 산정 및 지급)** 퇴직금의 산정과 적립, 지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시효)** 퇴직금에 대한 청구권은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.

**제5조(양도 및 담보의 금지)**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,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**제6조(기간계산)** ① 재직기간의 계산은 우리대학교에 채용된 일자로부터 가산하여 퇴직 또는 사망일까지로 한다.

② 계산상 1개월 미만 시 15일 이상을 1개월로 계산한다.

**제7조(사망에 따른 민법준용)** 사망자의 퇴직금 수령자는 민법에 따른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